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구민 고지(안 제6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잇따른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고의 예방, 대응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전부개정(2013. 6. 4. 개정, 2015. 1. 1. 시행)되었으며,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음.
- 또한, 기본계획과 별도로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법의 일부개정(2016. 5. 29. 개정, 2017. 5. 30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
- 한편, 영등포구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현황은 2024년 6월 기준 285개로 파악됨에 따라,
 - 영등포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구민에게 사고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도록 하여, 입법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책무)제1항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제2항은 법 제5조에서 부여한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는 법 제6조제5항 및 법 제7조의2제1호에 근거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7조에서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서울특별시 지역환경보전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는 법 제23조의4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 계획 수립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구민 고지)는 사고 발생 시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사고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즉시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보 신뢰도가 낮은 경우 고지를 유보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부터 기능, 구성, 운영, 의견 청취 및 기밀 유지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들로,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교육·훈련)는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대응계획에 따른 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대응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재정지원)는 법 제4조제2항, 제7조의2제4호 및 제11조의2제7항에 근거하여 관련 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 검토결과

- 영등포구는 2024년 6월 기준 285개소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내 화학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바,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신속한 정보고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6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이규선, 이순우, 최인순
차인영, 유승용, 전승관
임헌호, 정선희 의원 (8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을 철저히 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구민 고지(안 제6조)
- 라.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구민 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관련 부처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2.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